

폐천부지 등 교환(양여)증서

제 호

주 소 :

성 명 : (생년월일 :

년 월 일 위의 자가 신청한 시 구 읍 동
도 군 면 리

번지서(천)의 폐천부지 등을 「하천법」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교환(양여)합니다.

1. 교환(양여)폐천부지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비고

2. 조건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 · 지방환경청장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직인